삼 척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 관 의 장

시 보

제1294호 2023. 8. 18. (금)

시화－철쭉

시조－갈매기

시목－느티나무

고 시

○ 삼척시 고시 제2023-127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 2

공 고

○ 삼척시 공고 제2023-1337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3

○ 삼척시 공고 제2023-1346호 통행의 금지 · 제한 공고[봉황촌 철도가도교(남양가도교) 개축공사] ---------- 6

공람									

발행 : 문화홍보실 (전화 : 570－3221, FAX : 570－3132)

삼척시 고시 제2023-127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삼척시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8. 18.

삼 척 시 장

(단위 : 백만원)

구분 / 회계별	제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	%	비고
합 계	**986,427**	**829,104**	**157,323**	**19.0**	
일 반 회 계	931,306	783,894	147,412	18.8	
특 별 회 계	55,121	45,210	9,911	21.9	
기타 특별회계	21,102	19,038	2,064	10.8	
· 하수도사업	10,336	8,960	1,376	15.4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6,378	6,327	51	0.8	
·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지원사업	891	786	105	13.4	
·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582	82	500	609.8	
· 의료급여기금	1,517	1,485	32	2.2	
· 자활기금운영	550	550	-	-	
· 주차장	547	547	-	-	
· 임대아파트관리운영	301	301	-	-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	34,019	26,172	7,847	30.0	

삼척시 공고 제2023-1337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이 철거되었음에도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자 하나 소유자의 거소 또는 주소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의 규정에 의거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장소 : 삼척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고기간 : 2023. 8. 14. ~ 2023. 8. 29. (15일간)
3. 말소(예정)일자 : 2023. 8. 30.
4. 공고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1	나.당사자	성명(명칭)	이상○
		주 소 (대장상주소)	166-3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철거(멸실)
	라. 처분하고한 내용		건축물대장 말소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노곡면 하마읍리 166-2 연면적(177㎡), 시멘트블럭조, 축사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 사항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팀(☎033-570-39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8. 14.

삼 척 시 장

[별지 제11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2. 당사자	성 명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전화번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삼척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와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청) 건축과 건축물관리팀
○ 연 락 처 : 033)570-3969

삼척시 공고 제2023-1346호

[○] 통행의 금지 · 제한 / [○]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

「도로법」 제76조제1항 · 제2항, 제77조제1항 ·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 통행의 금지 · 제한 / [○] 차량의 운행 제한 을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18일

삼 척 시 장

도로의 종류	시도	노선명	도시계획도로 (중로1-10, 소로3-277)
통행 금지 대상 운행 제한 대상	모든 차량 및 건설기계 2.5톤 이상의 차량	구간	삼척시 정상동 374-2번지 ~ 삼척시 정상동 388-4번지
통행 금지 기간	2023년 8월 28일부터 2023년 9월 12일까지		
운행 제한 기간	2023년 9월 13일부터 별도 통지 (공사 완료시 까지)		

-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유 -

정상동 봉황촌 철도 가도교를 개축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생활 편익 도모를 위해 봉황촌 철도가도교 확장 공사에 따른 통행 및 운행 제한

- 사 업 명 : 봉황촌 철도가도교(남양가도교) 개축공사
-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정상동 432-3번지 일원
- 사 업 량 : 철도가도교 개축(B=6.6m, L=24.1m)
-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6개월

그 밖의 사항

- 통제 관련 사항은 관련 유관 기관 협조 요청
- 집중호우 및 자연 재난시 통제 일자 변경

첨부서류: 1. 교통통제 구간 위치도 1부.
2. 전면 통제구간 세부현황 1부.
3. 통행제한에 따른 우회도로 노선 및 임시도로 노선 각 1부. 끝.

위 치 도
동 해 시
삼 척 시
송정동
용정동
구호동
구미동
북평산업단지
추암동
이도동
내구동
단봉동
중산동
호현동
지가동
갈천동
나동
우지동
성내동
삼척대학교
삼척
교동지구
당저동
동양촌 철도 가도교 개축공사
정상동
정 상 동
자원동
원당동
오사동
성남동
건지동
마평동
사직동
은분동
근산동
적노동
조비동
삼맹방리
삼거노리
금계리
근덕면
7
38

전면 통제구간 세부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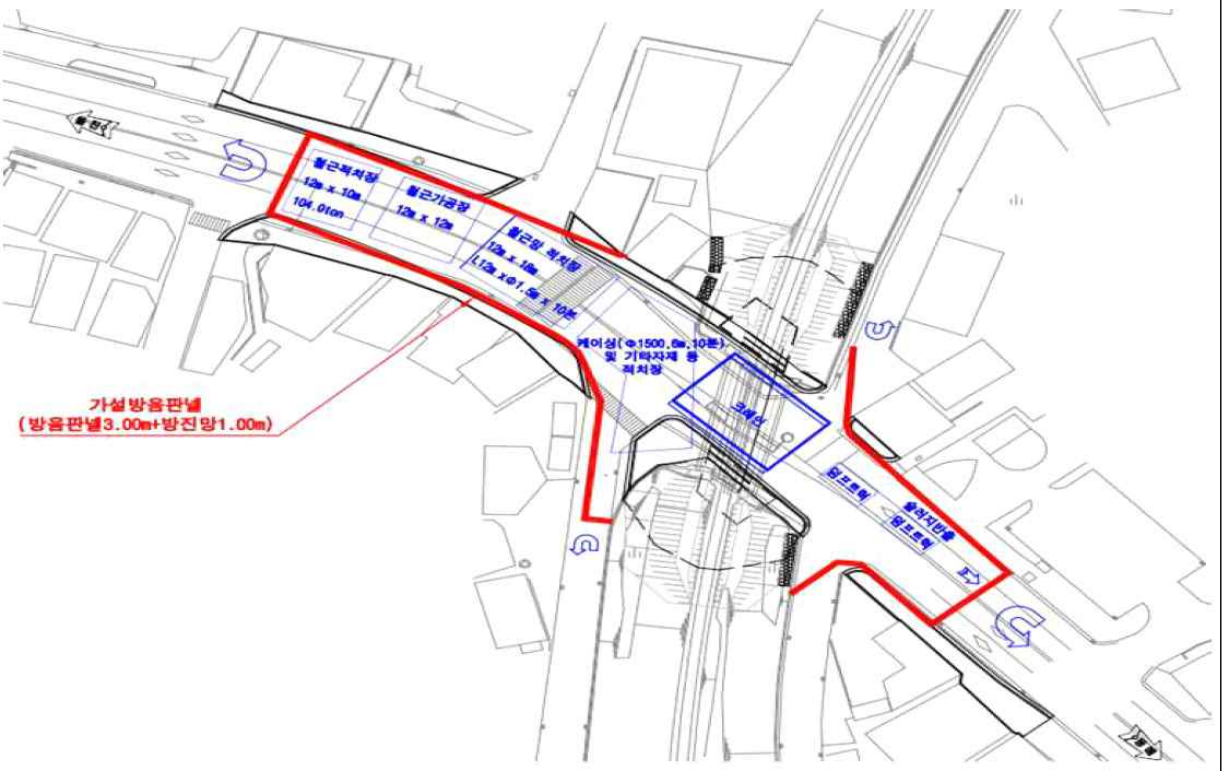

통 행 제 한 에 따 른 우 회 도 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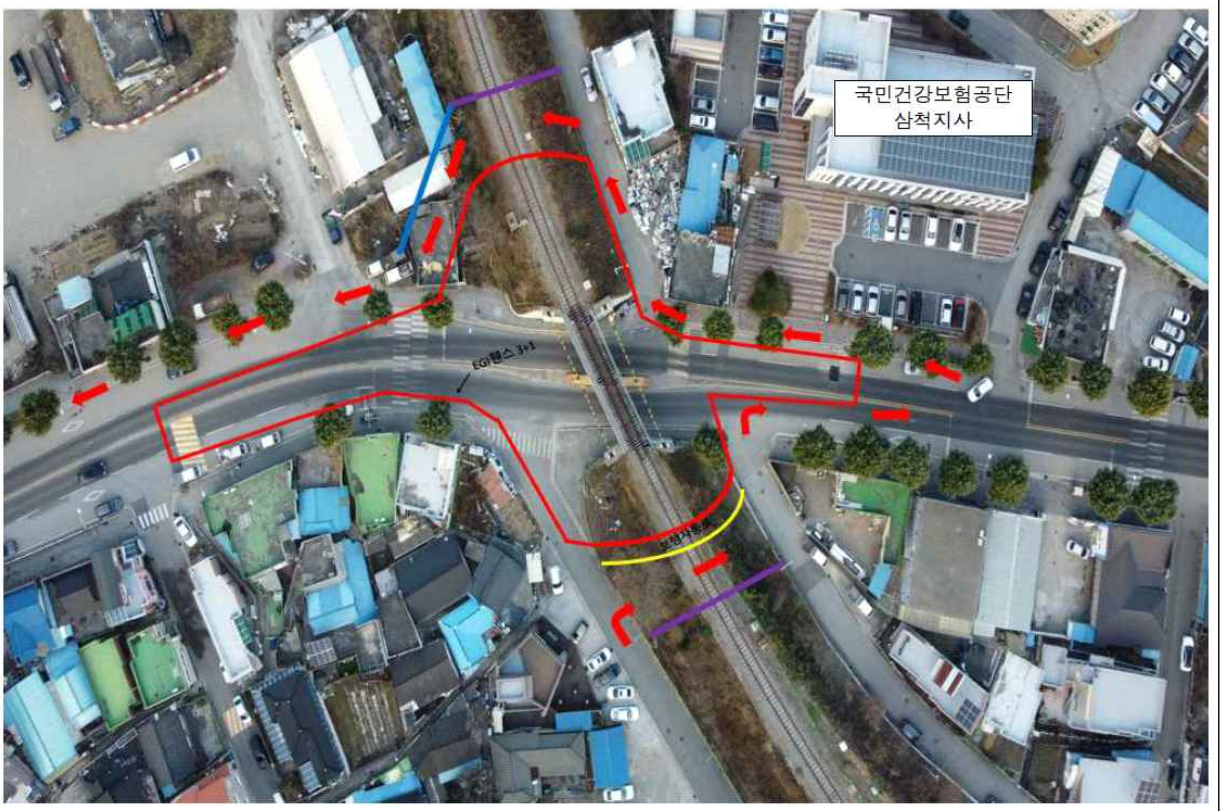
임 시 도 로 노 선